

[일련번호 : 5]

# 양 천 구

## 시 정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복무·급여관리 및 4대보험료 퇴직정산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복무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19조(근무상황)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상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

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 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에 따라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채용 관계가 끝난 후 법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등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가.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과에서는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근무 첫 달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이로 인해 아래 [표 1]와 같이 1일분의 임금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록부를 실제 근무상황과 다르게 관리하는 등 근무상황 기록·관리에 소홀하였다.

[표 1]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착오 산정내역

연도별	대상자	과다 지급액	비고
		158,160원	2.1.~12.31. 근로자 → 근무 첫 달에는 연차 미발생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 발생)
2023		78,099원(1일)	연차 착오 산정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 10일, 실제 사용 연차 : 11일) · 연차수당 : 2월, 6월, 8월 · 연차 사용 : 3/9, 4/3, 5/11, 7/6, 9/12, 10/13, 11/6, 11/7
2024		80,052원(1일)	연차 착오 산정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 10일, 실제 사용 연차 : 11일) · 연차수당 : 미지급 · 연차 사용 : 2/15, 3/14, 4/17(2시간), 5/9, 5/23, 6/4, 7/25(1시간), 8/7, 9/4, 10/4, 11/1, 11/4(4시간), 12/5

나.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퇴직정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과에서는 퇴직한 \*\*\*\* 기간제근로자의 정산된 보험료(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초과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액은 근로자로부터 추가징수하여 세외수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예산으로 납부하는 등 정산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퇴직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미정산 내역

성명	생년월일	퇴직일	퇴직근로자 보험료 미정산액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
			근로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실업급여	사업주 실업급여	사업주 고안직능	사업주
			13,040	13,040	1,600	1,600	5,530	5,530	5,230	6,420
			-29,430	-29,430	-2,520	-2,520	0	0	4,660	5,740
			-34,650	-34,650	-4,230	-4,230	3,340	3,340	3,250	4,000
			-29,250	-29,250	-3,600	-3,600	4,830	4,830	4,710	5,800
			-5,750	-5,750	-700	-700	4,900	4,900	4,630	5,700
			-38,700	-38,700	-4,740	-4,740	3,550	3,550	3,350	4,140
총 계			-124,740	-124,740	-14,190	-14,190	22,150	22,150	25,830	31,800
- 총 미징수액 : 36,790원										
- 총 미반환액 : 153,570원										

※ (-) :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 (+) : 근로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과다지급한 급여 총 158,160원을 환수하고, 미징수한 보험료 총 36,790원은 징수하고, 반환하지 않은 보험료 153,570원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